

# 학술지편집위원회 규정

<2012. 1. 1. 제정>

<2015. 1. 1. 개정>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학회(이하 “학회” 라 한다)의 학회지 및 학술지 발행을 위한 학술지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업무)** 본 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본 학회의 영문 학술지인 “Micro and Nano Systems Letters (MNSL)”의 발간기획 수립, 투고 논문의 심사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 학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“학술지 편집규정”에 정한다.
2. 기타사항

**제3조(구성)** 본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간사 1명 및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학술지편집이사로 보하고, 간사 및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

**제4조(위원장·간사)** 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위원 자격)** 편집 위원은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한다.

-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동등 직급 이상의 자로서,
- ② 국내외 학술지에 15편 이상 또는 SCI 등재 논문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자.

**제6조(회의)** 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, 학회 사무실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메일 등의 통신 매체를 이용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 회의의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고, 안전은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,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)
2.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